



제 1150호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2
(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90호 공인 등록 공고 17
- 공고 제2014- 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1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1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31
법예고
- 공고 제2014- 124호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 40
람공고
- 공고 제2014- 135호 2014년 제1차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소 51
래셋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고 시

- 고시 제2014- 10호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인가 고시 52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우수 감사인력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규정사항 신설 및 현행 규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자체감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로 청렴한 남동구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각 조(條) 위에 장(章)을 삽입하여 대분류로 구분: 6개장, 34조문 변경

나.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 포함 (안 제2조)

다. 감사담당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감사담당자 자격기준 및 선발시 감사실장 의견 반영

○ 감사담당자 우대(특전), 감사담당자 교육 및 청렴의 의무 등

라. 그 밖에 현행 규칙의 미비점 보완

○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 확인서 징구, 질문서 발부, 문답서 작성 등

○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 처분 종류 구체화, 감사결과 공개 등

4.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및 제25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9조
-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2, FAX 453-2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우수 감사인력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규정사항 신설 및 현행 규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자체감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로 청렴한 남동구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각 조(條) 위에 장(章)을 삽입하여 대분류로 구분: 6개장, 34조문 변경
-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 포함 (안 제2조)
- 감사담당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감사담당자 자격기준 및 선발시 감사실장 의견 반영
 - 감사담당자 우대(특전), 감사담당자 교육 및 청렴의 의무 등
- 그 밖에 현행 규칙의 미비점 보완
 -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 확인서 징구, 질문서 발부, 문답서 작성 등
 -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 처분 종류 구체화, 감사결과 공개 등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및 제25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9조
-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구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법인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때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예규 및 고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구 의회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 주민센터 또는 국, 실,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화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그 밖에 감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감사계획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 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감사원·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사전준비)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5조(감사결과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9.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16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결과와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와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창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와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1조(이행결과와 확인) 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실시 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6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 서식)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실 소속 팀장 및 관련 분야 팀장급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률 제25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 받은 구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補正)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補正)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감사담당자

제2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따로 정한다.

제31조(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 또는 구청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그 밖에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 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90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 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통합민원증명발

급기 설치에 따른 공인 신조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4. 1. 13

○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1(중)		한글전서체 2.1cm × 2.1cm	
신 조 공 인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1(형)		한글전서체 2.1cm × 2.1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2(종)		한글전서체 2.1cm × 2.1cm	
신 조 공 인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1cm × 2.1cm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3(종)		한글전서체 2.1cm × 2.1cm	
	논현1동장인 논현1동통합민원3(횡)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1(종)		한글전서체 2.4cm × 2.4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조 공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1(황)		한글전서체 2.4cm × 2.4cm	
신조 공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2(종)		한글전서체 2.4cm × 2.4cm	
신조 공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2(황)		한글전서체 2.4cm × 2.4cm	
신조 공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3(종)		한글전서체 2.4cm × 2.4cm	
신조 공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논현1 동 통합민원3(황)		한글전서체 2.4cm × 2.4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9. 7. 31 조례 제956호로 제정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서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만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조례 없이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아)에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2월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세무과, 전화: 032-453-2362, FAX: 032453-2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9. 7. 31 조례 제956호로 제정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서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만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조례 없이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 참고자료

-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1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 등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 정비(안 제4조)
- 교부금전에 대한 구금고 예탁 규정 정비(안 제1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3조)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24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전화 : 453-2360 FAX : 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제17조의 제목 “(공탁 등)” 을 “(배분금전의 예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을 “법 제72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및 후단 중 “일시에” 를 각각 “한꺼번에” 로 한다.

제24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담보를” 을 “납세담보의 제공을” 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 “을 ”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구·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 “을 ” 성년자 2명이상 또는 구·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u> <u>4.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u>	제4조(세율) ----- 1. ~ 2. (현행과 같음) 3. <u>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u> 4. <삭제>
제1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배분금전의 예탁 등)----- ----- 법제72조에 따라 ----- ----- . <단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 -----한꺼번에 ----- ----- -----한꺼번에 -----.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u>납세담보를</u>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 <u>납세담보의 제공을</u> -----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 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 는 <u>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u> <u>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u> 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구·주민</u> <u>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u> <u>공무원 1명 이상</u>을 증인으로 참여시켜 야 한다.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 ----- ----<u>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u> <u>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u> -----. ② ----- - ----- <u>성년자 2명이상 또는 구·주민센터</u> <u>의</u> <u>공무원</u> -----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2014.1.1., 일부개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생략)

□ 「국세징수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1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천원으로 인상 함(제5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를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인상 함(안 제7조)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전화 : 453-2360 FAX : 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제15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및 제2항 단서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로 하고,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제5장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인구 50만 이상 의 시	45,000 원	36,000 원	27,000 원	18,000 원	12,000 원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제5조(세율) -----

-----.

1. ~ 4. (현행과 같음)

5. ----- 6천원

제7조(세율) -----

-----.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 원	54,000 원	40,500 원	27,000 원	18,000 원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 ----- ----- -----.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 ----- ----- ----- ----- ----- ----- 「인천광역시 시 시세 조례」 제5조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 ----- ----- ----- -----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 조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신고의무)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u>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u> 」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제23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②----- ----- ----- ----- 「 <u>인천광역시 시세</u> 」 제5조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장 주민세(종업원분)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 라. (생략)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 14. (생략)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② ~ ⑤ (생략)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 ⑦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24호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73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3,391㎡(260필지)
4. 공고기간 : 2014.1.16.~2014.2.17.
5.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6.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3월
7. 사업비의 추산액 : 59,530천원
8.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등
 -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9.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나. 전 화 : 032-453-6152
 - 다. 팩 스 : 032-453-2479
 - 라. 우 편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① 사 업 명	간석부평농장2지구			
② 사 업 지 구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73번지 일원			
③ 시 행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④ 의 건 제 출 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 의 건 내 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목	면적 (㎡)	비고
1	남동구 간석동	1-173	잡종지	1,083	
2	남동구 간석동	1-174	잡종지	649	
3	남동구 간석동	1-175	잡종지	544	
4	남동구 간석동	1-176	잡종지	1,888	
5	남동구 간석동	1-177	잡종지	799	
6	남동구 간석동	1-178	잡종지	556	
7	남동구 간석동	1-179	잡종지	284	
8	남동구 간석동	1-180	잡종지	1,524	
9	남동구 간석동	1-182	잡종지	983	
10	남동구 간석동	1-183	대	530	
11	남동구 간석동	1-184	대	212	
12	남동구 간석동	1-185	잡종지	1,044	
13	남동구 간석동	1-186	잡종지	847	
14	남동구 간석동	1-187	잡종지	224	
15	남동구 간석동	1-188	대	274	
16	남동구 간석동	1-189	잡종지	1,469	
17	남동구 간석동	1-190	잡종지	1,311	
18	남동구 간석동	1-193	잡종지	1,341	
19	남동구 간석동	1-194	잡종지	2,055	
20	남동구 간석동	1-196	잡종지	613	
21	남동구 간석동	1-197	공장용지	701	
22	남동구 간석동	1-198	잡종지	787	
23	남동구 간석동	1-199	잡종지	937	
24	남동구 간석동	1-200	잡종지	775	
25	남동구 간석동	1-201	잡종지	591	
26	남동구 간석동	1-202	잡종지	976	
27	남동구 간석동	1-203	주유소용지	478	
28	남동구 간석동	1-205	잡종지	234	
29	남동구 간석동	1-206	잡종지	8,607	편입면적
30	남동구 간석동	1-236	잡종지	631	
31	남동구 간석동	1-237	잡종지	745	

32	남동구 간석동	1-238	도로	7,425	
33	남동구 간석동	1-239	잡종지	527	
34	남동구 간석동	1-240	잡종지	160	
35	남동구 간석동	1-241	공장용지	936	
36	남동구 간석동	1-242	잡종지	368	
37	남동구 간석동	1-243	잡종지	1,038	
38	남동구 간석동	1-244	대	278	
39	남동구 간석동	1-245	잡종지	256	
40	남동구 간석동	1-246	잡종지	925	
41	남동구 간석동	1-247	잡종지	573	
42	남동구 간석동	1-248	도로	180	
43	남동구 간석동	1-249	잡종지	418	
44	남동구 간석동	1-250	잡종지	847	
45	남동구 간석동	1-251	잡종지	254	
46	남동구 간석동	1-252	잡종지	292	
47	남동구 간석동	1-253	잡종지	811	
48	남동구 간석동	1-254	잡종지	226	
49	남동구 간석동	1-255	잡종지	152	
50	남동구 간석동	1-256	잡종지	514	
51	남동구 간석동	1-257	잡종지	448	
52	남동구 간석동	1-258	잡종지	660	
53	남동구 간석동	1-259	잡종지	1,122	
54	남동구 간석동	1-260	잡종지	1,201	
55	남동구 간석동	1-261	잡종지	106	
56	남동구 간석동	1-262	잡종지	182	
57	남동구 간석동	1-263	잡종지	328	
58	남동구 간석동	1-264	공장용지	297	
59	남동구 간석동	1-265	잡종지	158	
60	남동구 간석동	1-266	잡종지	1,081	
61	남동구 간석동	1-267	잡종지	1,054	
62	남동구 간석동	1-268	잡종지	661	
63	남동구 간석동	1-269	잡종지	709	
64	남동구 간석동	1-270	잡종지	314	
65	남동구 간석동	1-271	잡종지	619	

66	남동구 간석동	1-272	대	63	
67	남동구 간석동	1-273	잡종지	915	
68	남동구 간석동	1-274	잡종지	316	
69	남동구 간석동	1-275	대	83	
70	남동구 간석동	1-276	잡종지	286	
71	남동구 간석동	1-277	잡종지	2,236	
72	남동구 간석동	1-278	잡종지	1,481	
73	남동구 간석동	1-279	잡종지	1,373	
74	남동구 간석동	1-280	잡종지	889	
75	남동구 간석동	1-281	공장용지	466	
76	남동구 간석동	1-283	공장용지	341	
77	남동구 간석동	1-284	잡종지	575	
78	남동구 간석동	1-285	잡종지	220	
79	남동구 간석동	1-286	잡종지	1,327	
80	남동구 간석동	1-287	잡종지	502	
81	남동구 간석동	1-288	잡종지	278	
82	남동구 간석동	1-289	잡종지	625	
83	남동구 간석동	1-290	잡종지	575	
84	남동구 간석동	1-291	잡종지	474	
85	남동구 간석동	1-292	잡종지	486	
86	남동구 간석동	1-293	잡종지	232	
87	남동구 간석동	1-294	잡종지	811	
88	남동구 간석동	1-295	잡종지	136	
89	남동구 간석동	1-296	잡종지	466	
90	남동구 간석동	1-306	잡종지	215	
91	남동구 간석동	1-307	대	472	
92	남동구 간석동	1-309	잡종지	12	
93	남동구 간석동	1-329	잡종지	223	
94	남동구 간석동	1-356	잡종지	71	
95	남동구 간석동	1-357	잡종지	217	
96	남동구 간석동	1-359	대	301	
97	남동구 간석동	1-362	잡종지	292	
98	남동구 간석동	1-363	잡종지	80	
99	남동구 간석동	1-365	잡종지	235	

100	남동구 간석동	1-366	공장용지	575	
101	남동구 간석동	1-388	잡종지	94	
102	남동구 간석동	1-389	잡종지	590	
103	남동구 간석동	1-390	잡종지	72	
104	남동구 간석동	1-392	공장용지	368	
105	남동구 간석동	1-393	공장용지	338	
106	남동구 간석동	1-394	공장용지	326	
107	남동구 간석동	1-395	잡종지	330	
108	남동구 간석동	1-397	잡종지	331	
109	남동구 간석동	1-398	잡종지	436	
110	남동구 간석동	1-399	잡종지	224	
111	남동구 간석동	1-400	잡종지	69	
112	남동구 간석동	1-401	잡종지	321	
113	남동구 간석동	1-402	대	328	
114	남동구 간석동	1-403	잡종지	307	
115	남동구 간석동	1-404	대	219	
116	남동구 간석동	1-405	대	826	
117	남동구 간석동	1-406	대	340	
118	남동구 간석동	1-407	대	340	
119	남동구 간석동	1-408	잡종지	339	
120	남동구 간석동	1-409	공장용지	635	
121	남동구 간석동	1-411	대	661	
122	남동구 간석동	1-412	공장용지	325	
123	남동구 간석동	1-413	잡종지	326	
124	남동구 간석동	1-414	잡종지	334	
125	남동구 간석동	1-415	잡종지	325	
126	남동구 간석동	1-416	잡종지	330	
127	남동구 간석동	1-417	공장용지	334	
128	남동구 간석동	1-418	공장용지	241	
129	남동구 간석동	1-419	공장용지	241	
130	남동구 간석동	1-420	잡종지	300	
131	남동구 간석동	1-421	공장용지	333	
132	남동구 간석동	1-422	공장용지	334	
133	남동구 간석동	1-423	잡종지	324	

134	남동구 간석동	1-424	잡종지	330	
135	남동구 간석동	1-425	공장용지	330	
136	남동구 간석동	1-426	잡종지	334	
137	남동구 간석동	1-427	잡종지	330	
138	남동구 간석동	1-428	잡종지	332	
139	남동구 간석동	1-429	공장용지	330	
140	남동구 간석동	1-430	잡종지	330	
141	남동구 간석동	1-431	잡종지	331	
142	남동구 간석동	1-432	공장용지	214	
143	남동구 간석동	1-433	공장용지	333	
144	남동구 간석동	1-434	공장용지	331	
145	남동구 간석동	1-435	잡종지	330	
146	남동구 간석동	1-436	공장용지	333	
147	남동구 간석동	1-438	잡종지	421	
148	남동구 간석동	1-439	잡종지	313	
149	남동구 간석동	1-440	잡종지	257	
150	남동구 간석동	1-441	잡종지	249	
151	남동구 간석동	1-442	잡종지	497	
152	남동구 간석동	1-443	잡종지	345	
153	남동구 간석동	1-444	공장용지	346	
154	남동구 간석동	1-445	공장용지	517	
155	남동구 간석동	1-446	공장용지	520	
156	남동구 간석동	1-447	공장용지	346	
157	남동구 간석동	1-448	공장용지	345	
158	남동구 간석동	1-449	공장용지	345	
159	남동구 간석동	1-450	잡종지	330	
160	남동구 간석동	1-451	잡종지	331	
161	남동구 간석동	1-452	공장용지	339	
162	남동구 간석동	1-458	도로	60	
163	남동구 간석동	1-461	공장용지	596	
164	남동구 간석동	1-475	도로	135	
165	남동구 간석동	1-476	주차장용지	651	
166	남동구 간석동	1-477	잡종지	5,985	
167	남동구 간석동	1-479	잡종지	169	

168	남동구 간석동	1-480	잡종지	324	
169	남동구 간석동	1-485	주유소용지	617	
170	남동구 간석동	1-486	주유소용지	14	
171	남동구 간석동	1-489	잡종지	11	
172	남동구 간석동	1-498	잡종지	109	
173	남동구 간석동	1-499	잡종지	331	
174	남동구 간석동	1-500	잡종지	267	
175	남동구 간석동	1-504	잡종지	184	
176	남동구 간석동	1-533	잡종지	45	
177	남동구 간석동	1-535	잡종지	73	
178	남동구 간석동	1-537	잡종지	26	
179	남동구 간석동	1-539	잡종지	155	
180	남동구 간석동	1-546	잡종지	29	
181	남동구 간석동	1-548	잡종지	313	
182	남동구 간석동	1-561	대	220	
183	남동구 간석동	1-570	공장용지	279	
184	남동구 간석동	1-585	도로	4,901	편입면적
185	남동구 간석동	1-599	잡종지	134	
186	남동구 간석동	1-600	잡종지	13	
187	남동구 간석동	1-601	잡종지	293	
188	남동구 간석동	1-602	잡종지	108	
189	남동구 간석동	1-603	잡종지	242	
190	남동구 간석동	1-608	도로	1,482	
191	남동구 간석동	1-609	공장용지	38	
192	남동구 간석동	1-614	잡종지	361	
193	남동구 간석동	1-616	도로	235	
194	남동구 간석동	1-617	도로	8	
195	남동구 간석동	1-618	잡종지	38	
196	남동구 간석동	1-622	도로	17	
197	남동구 간석동	1-623	잡종지	515	
198	남동구 간석동	1-625	잡종지	1,173	
199	남동구 간석동	1-626	잡종지	1,209	
200	남동구 간석동	1-627	잡종지	440	
201	남동구 간석동	1-628	대	171	

202	남동구 간석동	1-629	도로	8	
203	남동구 간석동	1-648	도로	508	
204	남동구 간석동	1-649	잡종지	277	
205	남동구 간석동	1-650	잡종지	647	
206	남동구 간석동	1-654	잡종지	1,290	
207	남동구 간석동	1-658	공장용지	321	
208	남동구 간석동	1-659	잡종지	413	
209	남동구 간석동	1-660	잡종지	18	
210	남동구 간석동	1-662	도로	12	
211	남동구 간석동	1-663	도로	104	
212	남동구 간석동	1-664	도로	9	
213	남동구 간석동	1-678	잡종지	71	
214	남동구 간석동	1-679	잡종지	40	
215	남동구 간석동	1-694	임야	1,847	
216	남동구 간석동	1-695	임야	1,180	
217	남동구 간석동	1-696	공장용지	211	
218	남동구 간석동	1-698	임야	239	
219	남동구 간석동	1-702	도로	1,266	
220	남동구 간석동	1-707	임야	371	
221	남동구 간석동	1-708	임야	76	
222	남동구 간석동	1-713	잡종지	376	
223	남동구 간석동	1-724	임야	112	
224	남동구 간석동	1-729	임야	1,224	
225	남동구 간석동	1-730	임야	670	
226	남동구 간석동	1-735	도로	11	
227	남동구 간석동	1-736	도로	8	
228	남동구 간석동	1-737	도로	31	
229	남동구 간석동	1-738	잡종지	175	
230	남동구 간석동	1-739	임야	1,260	
231	남동구 간석동	1-741	잡종지	281	
232	남동구 간석동	1-744	잡종지	37	
233	남동구 간석동	1-745	잡종지	16	
234	남동구 간석동	1-746	도로	199	
235	남동구 간석동	1-747	잡종지	178	

236	남동구 간석동	1-751	잡종지	486	
237	남동구 간석동	1-755	잡종지	912	
238	남동구 간석동	1-759	잡종지	620	
239	남동구 간석동	1-761	잡종지	3	
240	남동구 간석동	1-763	잡종지	38	
241	남동구 간석동	1-772	잡종지	440	
242	남동구 간석동	1-778	임야	38	
243	남동구 간석동	1-779	임야	26	
244	남동구 간석동	1-780	임야	300	
245	남동구 간석동	1-783	잡종지	420	
246	남동구 간석동	1-789	도로	515	
247	남동구 간석동	1-790	임야	27	
248	남동구 간석동	1-796	잡종지	20	
249	남동구 간석동	1-797	잡종지	358	
250	남동구 간석동	1-798	잡종지	405	
251	남동구 간석동	1-799	잡종지	234	
252	남동구 간석동	1-801	잡종지	271	
253	남동구 간석동	1-802	잡종지	250	
254	남동구 간석동	1-806	도로	496	
255	남동구 간석동	1-811	잡종지	17	
256	남동구 간석동	1-812	임야	622	
257	남동구 간석동	1-813	임야	158	
258	남동구 간석동	산34-18	임야	125	
259	남동구 간석동	산34-19	임야	3,474	
260	남동구 간석동	산34-5	임야	8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5호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1. 20 ~ 2. 4
4. 열람 및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조서
 - 나. 소 유 자

연번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토지소유자	이표자	남동구 수산동	9-2외 1필지	폐문부재	
2	토지소유자	이순보	남동구 수산동	10-1외 2필지	주소불명	

6. 기타

공고문 및 조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10호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사용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용민원명 및 수수료

민 원 구 분	수수료(원)	민원구분	수수료(원)
주민등록등(초)본	400	주민등록등(초)본 이해관계인	500
인감증명서	60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1,000
건축물대장(일괄, 총괄표제부)	500	토지대장	500 (장당100원추가)
세목별과세증명서	800	지적도	7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		

2. 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장

3. 발행장소 : 논현1동주민센터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4. 발행년월일 : 2014년 1월 일

5.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 NIS214018번, NIS214019번, NIS214020번

6. 인증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인증항목

가. 발행년월일

나. 발행기관명

다. 공인

라. 수입증지(소인문)